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0의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과 제5조제2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에서는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해상충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으로 한다.

제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2(그밖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등) ①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대부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이하 이 영에서 “투자자”라 한다)와 대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차입자”라 한다)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이하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라 한다)의 중개 행위와 연계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
2. 그밖에 제1호의 투자자에 준하는 자와 차입자를 온라인에서 중개하

는 자의 중개 행위와 연계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건전한 영업이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제4조의4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은 이 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총자산한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하는 날까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10(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p> <p>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u>전기통신사업</u></p> <p>2.~ 5. (생략)</p> <p>② ~ ③ (생략)</p> <p><u><신 설></u></p> <p> </p> <p><u><신 설></u></p>	<p>제2조의10(겸업금지업종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u>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과 제5조제2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에서는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해상충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u></p> <p>2.~ 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2조의12(그밖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등) ①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라 한다)를 말한다.</u></p> <p>1. <u>대부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이하 이 영에서 “투자자”라</u></p>

한다)와 대부를 받으려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차입자”라
한다)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이하 “온라인대출정보중
개업자”라 한다)의 중개 행위
와 연계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

2. 그밖에 제1호의 투자자에 준
하는자와 차입자를 온라인에
서 중개하는 자의 중개 행위와
연계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업
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건전한
영업이 가능하다고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자

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생략)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
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
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서 신설>

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제2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유 대
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
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
으로 하는 권리를 투자자에
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
권은 이 항의 전단에도 불구

하고 총자산한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2100-2612